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현황 및 정책 방향





제 주 연 구 원 안 경 아 책임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박 성 준 정책자문위원



제주연구원 정책이슈브리프 2017년 9월 29일 Vol. 273

발행처: 제주연구원 발행인: 강기춘

주 소: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 제주연구원은 지역사회가 안고 있는 현안 문제에 대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다양한 정책 방안을 선제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 본 연구를 토대로 보다 합리적이고 발전적 대안들이 도출되어 도민의 삶의 질적 향상과 제주발전에 디딤돌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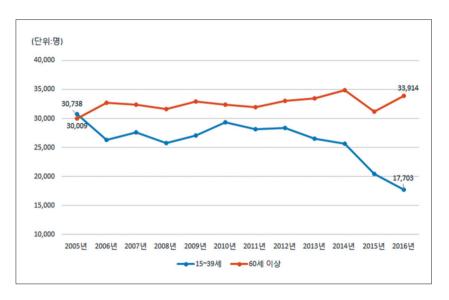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현황 및 정책 방향



- I. 들어가며
- Ⅱ. 농업 고용노동 수급 문제
- Ⅲ.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현황
- Ⅳ.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정책 방향

I 들어가며

- 2016년 기준 제주지역의 농가당 고용노동 투입량은 전국 평균보다 3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기준 지역별 농가당 고용노동 투입량을 조사한 결과, 전국 평균은 129시간이고, 제주지역은 367시간임(통계청, 2016, 농가경제조사)
 - 2016년 기준 재배 작물에 따른 농가당 고용노동 투입량을 조사한 결과, 과수 및 채소농가 212시간, 논벼 농가 25.14시간임(통계청, 2016, 농가경제조사)
 - 제주지역이 과수 및 채소 주산지이므로 전국 평균보다 농가당 고용노동 투입량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음
- 2005~2016년 제주지역 연령별 농가 구성원을 분석한 결과, 60세 이상 농가 구성원은 자연 증가한 반면 15~39세 농가 구성원은 이탈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제주지역 60세 이상 농가 구성원은 2005년 30,009명에서 2016년 33,914명으로 증가하였으며, 15~39세 농가 구성원은 2005년 30.738명에서 17.703명으로 감소함



〈그림 1〉 제주지역 연령별 농가 구성원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 향후 제주지역이 감귤, 월동채소 등 원예작물 주산지로서의 위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농업 고용 노동 수급 안정화를 위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함
 - 2017년 마늘 수확기 농촌 일손부족을 완화하기 위해서 대학생, 경찰, 공무원 등이 봉사활동을 나선 바 있으나, 일시적인 대책으로 매년 반복되는 파종 및 수확기 인력 수급난을 완화하기에는 하계가 있음
 - 아울리 인력 부족은 농작업 지연 및 노임 상승에 영향을 주어, 농가의 부담이 가중되므로 정책적인 대응이 필요함

4

- 이에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수급 안정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서 농업 고용노동 수급 문제 검토 및 현황을 진단하고 이를 토대로 정책 방향을 제안하고자 함
 - 기존 연구 검토를 통해 농업 고용노동 수급 문제를 검토함
 -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투입 및 공급경로 분석을 통해 현황을 진단함
 - 농업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제안함

II. 농업 고용노동 수급 문제

- 농업 고용노동은 가구원 노동 및 농기계로 대체될 수 있으며 노동시장 상황에 따라 수급 문제가 발생함
 - 농업 고용노동은 농촌의 노동교환 방식인 수눌음(품앗이)과 무급인 가구원 노동과 구별되는 개념임
 - 인력 작업은 농기계 작업으로 대체될 수 있으며, 기계화되지 못한 작업에는 고용 인력이 투입될 수 밖에 없음
 - 농업 고용노동은 농가가 농업 생산과정에 투입하는 노동 중 화폐와 교환되는 노동이므로 노동 공급이 부족하면 임금이 상승함(김정섭 외, 2014)
- 농업 고용노동 문제는 기존 농업 고용노동 관련 연구 검토를 통해 농업 고용노동 수급 문제를 구체 화할 필요성이 있음
- 첫 번째 농업 고용노동 수급 문제는 과수 및 채소 농작업 피크기 농가의 일용노동 조달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임(엄진영 외, 2016, 김정섭 외, 2015, 장민기 외, 2016)
 - 수산양식 어가, 축산 농가, 시설채소 농가는 연중 농작업을 하므로 상시노동을 투입하는 반면, 노지채소 농가는 이식·수확기, 과수 농가는 적과·수확기에 일용노동을 투입함
 - 고용노동은 종사상 지위로 1년 이상 월급제로 고용계약을 하는 상시노동과 일당을 지급하는 일용노동으로 구분됨
 - 노지채소 및 과수 주산지에서는 고용노동 수요가 집중되어 일용노동 조달이 원활하지 않음
- 두 번째 농업 고용노동 수급 문제는 농업 고용노동은 일당제 일자리인 반면 일정한 숙련도를 필요로 하므로, 신규 인력의 시장 진입이 원활하지 않다는 것임
 - 도외 인력 고용 시 농가의 애로사항이 '임금에 비해 능력이 낮다'(33.3%), '작업숙련도가 낮다' (22.2%)로 조사된 바 있음(강승진 외, 2014)
 - 예를 들어 감귤 수확 시 과피 손상이 쉬우므로 감귤 농가는 매년 동일한 인력을 고용하는 경향이 있음
- 세 번째 농업 고용노동 수급 문제는 다른 산업보다 농업 고용노동의 임금 수준이 낮아서 고용노동 유입에 하계가 있음
 - 2017년 제주지역 여성 노임은 9시간 기준 65,000원 내외로 시간당 7,222원 정도의 수준임
 - 2018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7,530원으로 결정됨

- 농업 고용노동의 시간당 노임은 최저임금 수준으로 농업 분야는 다른 산업분야에 비해 고용노동의 경제적 유인이 낮음
- 결론적으로 품목별 농가의 고용노동 월별 투입량 분석을 통해 농업 고용노동 수요를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으며, 농업 공급 경로 분석을 통해 농가 입장에서 농업 공급 조달의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음

지역 농업 고용노동 혀황

Ⅲ. 제주 │ 1. 농업 고용노동 투입 분석

- 농업 고용노동 투입 분석은 면적당 작물별 노동 투입량과 농가당 월별 고용노동 투입 분석을 통해 고용노동 수요가 높은 품목과 투입 시기를 분석함
 - 면적당 작물별 노동 투입량은 농촌진흥청의 농가소득분석표를 분석함
 - 농가당 월별 고용노동 투입량은 통계청의 농가경제조사 일계부를 분석함
 - 통계청은 최근 자료로 2010년 농가경제조사 일계부를 공개하고 있음
 - 제주지역 주요 작물 노동 투입량 분석 결과, 하라봉, 하우스 월동감귤, 당근, 마늘, 양파 등 재배 시 고용노동 시간은 300시간/ha 이상인 것으로 나타남
 - 맥주보리와 콩은 주요 농작업이 기계화되었으며, 당근, 월동무, 양배추, 가을감자 등은 파종ㆍ이식 작업이 기계화되어 있음
 - 마늘, 양파 등은 파종 · 이식 및 수확에 인력이 투입되므로 고용노동 투입량이 높음

〈표 1〉 제주지역 작물별 노동 투입량 및 기계화

(단위: 시간/ha)

품목	자가노동	고용노동	총 노동	파종 · 이식 작업	수확 작업
노지감귤	870	260	1,130	-	인력
한라봉	1,100	640	1,740	-	인력
하우스 월동감귤	500	830	1,330	-	인력
월동무	90	290	380	기계	인력
양배추	300	160	460	기계	인력
당근	230	510	740	기계	인력
마늘	530	750	1,280	인력	인력
양파	330	570	900	인력	인력
맥주보리	50	0	50	기계	기계
콩*	147	27	174	기계	기계
가을감자	220	130	350	기계	인력

- * 출처 : 농촌진흥청, 2017, 2016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
- * 주 : 콩은 전국자료를 참고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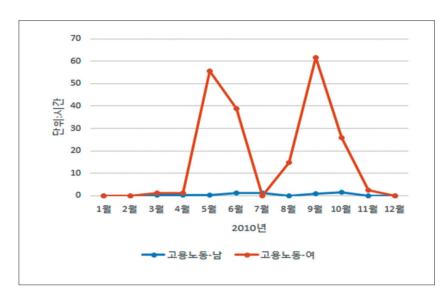
- 고용노동 투입량이 높은 품목인 감귤, 마늘, 채소류 등을 중심으로 농가당 월별 고용노동 투입량을 분석하겠음
- 감귤 농가당 월별 고용노동 투입량 분석결과, 〈그림 2〉와 같이 여성 고용노동 투입량은 11~12월에 가장 높고, 남성 고용노동 투입량은 3월에 가장 높음



〈그림 2〉 2010년 기준 제주지역 감귤 농가 월별 고용노동 투입량

출처: 통계청, 2010, 농가경제조사 일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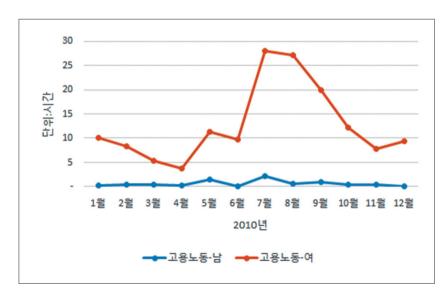
- 감귤 재배순기를 검토한 결과, 고용노동이 투입된 농작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음
 - 11~12월 노지감귤 수확작업, 3월 정지·전정 작업, 1~3월 만감류 및 월동감귤 수확작업, 6월 열매 매달기 작업으로 볼 수 있음
 - 여성 고용노동은 감귤 수확 작업과 열매 매달기 작업에 주로 투입되고, 남성 고용노동은 정지 · 전정 작업에 투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마늘 농가당 월별 고용노동 투입량 분석결과, 〈그림 3〉과 같이 여성 고용노동 투입량은 5~6월과 8~10월에 가장 높고, 남성 고용노동 투입량은 연중 낮음
- 마늘 재배순기를 검토한 결과, 고용노동이 투입된 농작업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유추할 수 있음
 - 5~6월 마늘 수확작업, 8~10월 마늘 파종작업으로 볼 수 있음
 - 여성 고용노동은 파종 및 수확 작업에 주로 투입되고, 남성 고용노동 투입량은 매우 낮음



〈그림 3〉 2010년 기준 제주지역 마늘 농가 월별 고용노동 투입량

출처 : 통계청, 2010, 농가경제조사 일계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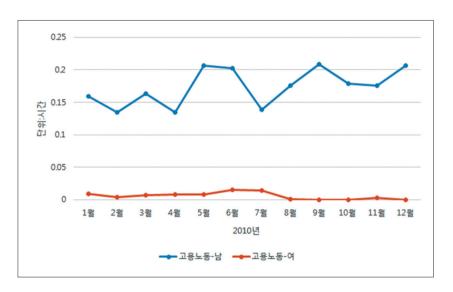
- 채소 농가당 월별 고용노동 투입량 분석결과, 〈그림 4〉와 같이 여성 고용노동 투입량은 7~8월에 가장 높고, 남성 고용노동 투입량은 연중 낮음
 - 채소 농가는 과채류, 엽채류, 조미채소류, 근채류 등을 재배하는 농가임



〈그림 4〉 2010년 기준 제주지역 채소 농가 월별 고용노동 투입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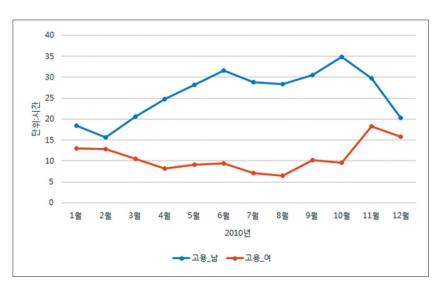
출처 : 통계청, 2010, 농가경제조사 일계부

- 이외에도 제주지역 양돈과 수산업의 경우는 통계청이 조사한 농가 수가 매우 적어 전국 농가경제 조사 일계부 및 어가경제조사 일계부를 분석함
 - 양돈 산업은 생산주기의 지역적인 차이가 거의 없음
- 전국 양돈농가 및 수산어가 고용노동 투입량을 분석한 결과, 과수 및 채소 농가와 달리 남성 고용 노동 투입량이 여성보다 높음
 - 양돈 농가 및 수산 어가는 연중 남성 고용노동 투입량이 높아 상시고용으로 고용인력을 조달할 수 있음



〈그림 5〉 2010년 기준 전국 양돈 농가 고용노동 투입량

* 출처 : 통계청, 농가경제조사 일계부



〈그림 6〉 2010년 기준 전국 수산어가 고용노동 투입량

* 출처 : 통계청, 어가경제조사 일계부

- 마지막으로 제주지역의 모든 영농 품목을 포함하여 고용노동 투입량을 분석한 결과, 〈그림 7〉과 같이 여성 및 남성 고용노동 투입량의 계절적 편중이 상대적으로 낮아짐
 - 연중 농산물이 생산되는 제주지역의 특성으로 인해 남성 및 여성 고용노동 투입량의 계절적 편중이 상대적으로 낮음



〈그림 7〉 2010년 기준 제주지역 농가 월별 고용노동 투입량

■ 제주지역은 〈표 2〉와 같이 연중 농산물 생산과 농작업이 이루어지는 장점을 활용하여, 여성 고용 노동을 중심으로 작목 간 순회 농작업을 설계하면 상용화된 일용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

〈표 2〉 제주지역 주요 작물 재배순기

작목명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	월	9월	10월	11월	12월
노지감귤	수확											수	확
월동감귤		수	확										
만 감 류		수	확										
월 동 무		수확								파종			수확
마 늘					수	확					파종		
양 배 추		수확							정	식			수확
당 근	수	확					Ī	후종					수확
양 파				수	확						파종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웹페이지, 2017년 4월 농작업팀 면담

2. 농업 고용노동 공급 경로

□ 외국인 근로자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제주지역 외국인 근로자 취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외국인 근로자는 제조업, 축산업, 양식업 등에서 상대적으로 취업이 활발한 것으로 나타남
 - 2016년 9월 기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통해서 제주지역 내 취업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는 총 2.660명임
 - 그 중에서 종사자 수가 높은 분야는 제조업 844명, 양식업 702명, 축산업 52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3〉 제주지역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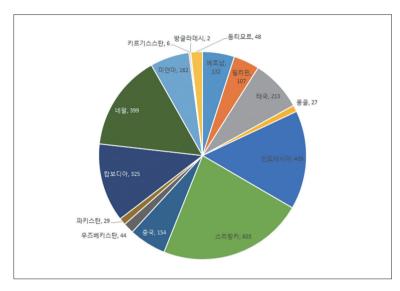
(단위: 명)

업 종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9월
	건설업		2,982	22	18	33
작물재배업		98	95	167	214	272
농 · 축 산업	축산업	345	357	413	471	527
	농축산 서비스업	2	1	1	1	6
	서비스업		29	58	67	95
어업	연근해어업	116	147	179	159	181
어립	양식업	387	473	577	650	702
제조업		299	385	508	711	844
	합 계		1,769	1,925	2,291	2,660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제주지역 외국인 근로자 국적을 분석한 결과, 스리랑카 603명, 인도네시아 409명, 네팔이 399명, 캄보디아가 325명 등의 순으로 나타남
- 고용허가제로 입국한 제주지역 외국인 근로자 중 중국인 수가 154명에 불과한 것은 무사증으로 입국한 중국인 수가 많고, 이들이 비공식적인 농업 고용시장의 일부분을 담당할 것으로 예상됨
 - 국회 법사위원회 주광덕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중국인 무사증 입국자¹⁾는 2007년 39,049명에서 2016년 7월 544,779명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중앙일보 2016년 9월 19일 자)
 - 중국인이 제주에서 경제활동을 한다면, 정식 고용계약이 필요 없고 고용노동 공급 부족을 겪는 농축산업과 어업 분야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음

^{1)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97조 외국인의 입국·체류에 관한 특례에 따라, 테러지원국 11개 국민을 제외한 외국인은 30일 동안 사중 없이 입국할 수 있다.



〈그림 8〉 제주지역 고용허가제를 통한 외국인 이주 노동자 국적

* 출처: 제주특별자치도 내부자료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촌인력중개센터

- 공공영역에서는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촌인력중개센터에서 농작업 고용인력을 연계하고 있으며, 농업 인력 수요에 비하면 연계 실적이 낮음
 - 농협 제주지역본부에서는 2016년에 총 6,793명을 중개하였으며, 이 중 고용노동 2,863명과 봉사 활동 3,930명을 연계하였음

〈표 4〉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농촌인력중개센터 실적

(단위: 명)

연도	유상일자리	무상일자리	사회봉사	전체
2013년	399	60	0	459
2014년	4,580	948	1,359	6,887
2015년	2,527	1,328	1,500	5,355
2016년	2,863	2,573	1,357	6,793

* 출처 :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 내부자료

□ 농작업팀

- 제주지역 농가는 주로 민간 농작업팀으로부터 농업 고용노동을 조달하고 있음
 - 강승진(2014)의 농가 조사결과, 농업인력 지원처의 61%가 민간 인력센터로 나타남

- 농작업팀은 사업자 등록된 직업소개소에 소속되어 운영되거나 일부 농작업팀은 사업자를 등록 하지 않고 우영되기도 함
- 농작업팀의 운영방식을 파악하기 위해서 2017년 4월 농작업팀 반장을 인터뷰하였으며, 인터뷰 결과는 다음과 같음
 - 농작업팀 반장은 11~25인승 차량을 이용한 인력운송, 작업지시, 중식 및 간식 제공 등의 업무를 담당함
 - 여성 노임은 65,000원/일, 남성노임은 120,000원/일 내외이고, 작업팀 반장은 노임과 별도로 교통비 및 식대로 15,000원을 수령함

여성 밭작물 파종작업 하루 일과(9시간 20분)

오전 6시 30분 농작업(1시간)

오전 7시 30분 간식, 국수(20분)

오전 7시 50분 농작업(4시간 10분)

오후 12시 점심식사(40분)

오후 12시 40분 농작업(2시간 20분)

오후 3시 간식(20분)

오후 3시 20분 농작업(1시간 30분)

오후 4시 50분 작업 종료

〈그림 9〉 농작업팀 운영 일과

- 농가 및 농작업팀의 애로사항이 발생한 사례는 다음과 같음
 - 상해보험이 미가입되어 있으므로 고용인력 사고 시 추가 부담이 발생함
 - 월동채소 파종적기 전후 15일 동안 인력확보 경쟁이 치열하므로, 농가는 농작업팀을 통해 100~200만 원 선입금²⁾하여 인력을 확보함
 - 수확기에는 농가 이외에도 화물 운송 사업자, 농협, 영농조합 등 유통주체들이 작업팀 반장을 통해 대규모 고용인력을 확보하므로 소규모 농가가 2~3명의 소수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시세보다 높은 노임을 지불함
-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현황 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음
 - 축산농가 및 수산어가는 상용 고용노동(외국인 이주 노동자 등)을 활용함
 - 받작물 및 감귤 등 워예 농가는 일용 고용노동을 활용함
 - 기관: 농협 농촌인력중개센터
 - 민간: 등록된 직업소개소 또는 미등록 농작업팀
 - 도외 유통인의 농작업 시 도내 농작업팀을 활용함
 - 도내 인력만으로는 농작업 피크기 인력 수요를 충당할 수 없으므로, 도외 인력, 외국인 이주 노동자 등을 추가로 공급할 필요성이 있음

²⁾ 고용인력 우선 확보를 위해 지불되는 선금을 몸빼비(작업복 비용)라고 함

IV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정책 방향

1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실태 조사

-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투입 현황과 공급 경로 분석으로 대략적인 농업 고용노동 현황을 파악할 수 있었으나, 농업 고용노동 정책을 수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실태조사가 필요함
 - 첫째, 일용노동의 상용화 설계를 위한 작목별 고용노동 투입량과 투입시기 조사가 필요함
 - 고용노동 투입량과 투입시기 조사를 통해 작목 간 순회 농작업 설계가 가능하며, 장기적으로는 공공출자 농작업 서비스 사업체를 통한 인력 파견 모델을 검토할 수 있음
 - 둘째, 농작업별, 시기별 여성 및 남성의 노임, 노무비용 조사가 필요함
 - 노임 및 노무비 조사를 통해 교통, 알선, 숙박, 작업복 등 노무비 지원 예산을 산출할 수 있음
 - 셋째, 고숙련자와 신규 인력 간의 직무능력 차이를 측정할 필요성이 있음
 - 직무능력 차이 측정으로 도외인력 및 외국인 이주노동자에 농작업 교육기가 노임의 일부를 지원 할 수 있음
 - 직무능력 차이 측정으로 고숙려자 유치를 위한 고숙련자 인증제 또는 작업 마일리지 등 유영함 수 있음

2.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 및 농가의 근로자 운용 지원

- 도외 농촌지역과 농업 고용인력 경합이 발생하는 9~11월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유치할 필요성이 있음
- 구체적으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유치와 농가의 근로자 운용지원이 필요함
 - 계절근로자 제도는 지자체의 의지와 역량에 따라 활용도가 결정됨
 - 계절근로자의 유치, 입국, 근무, 출국 등이 모두 지자체의 역할임
 - 계절근로자제도(seasonal worker admissions)는 보통 연중 노동력 수요차이가 크고 불규칙하 농업·관광업·건설업 등에서 많이 활용되는 제도로 단기사증(C-4)으로 3개월 동안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음
 - 2017년 제주특별자치도는 계절근로자로 총 136명을 신청하고 심사 후 121명이 허가된 반면, 농가 측의 포기로 최종적으로 42명이 확정됨
 - 농가는 1인당 월 135만 원 이상의 임금지급과 숙식제공, 산재보험 가입, 작업숙련도와 의사소통 문제 등으로 중도 포기하는 사례가 발생함
-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두 가지 방식으로 계절근로자를 유치함
 - 지방자치단체가 자매결연한 송출국의 지방자치단체 출신 외국인 선발
 - 지방자치단체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모국 가족을 선발
- 향후 계절근로자제도는 법제화 과정을 거쳐 제도화 될 것으로 예상됨

- 법제화 과정에서 노동 인권 및 복지문제 등 다양한 규제 적용이 예측됨
-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농가의 인식개선과 시설준비, 지자체의 전담 인력 확보, 법률적 지원 등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함

3. 조례 제정을 통한 전담사업조직 설치 및 운영

- 제주지역 농업 고용노동 정책이 지속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전담사업조직이 설치되고 민관이 협력하여 운영될 필요성이 있음
- 우선, 전담사업조직 설치에 대한 법적 근거인 농업 고용인력 지원 조례 제정이 필요함
- 2013년 이운룡 등이 발의한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법률」, 김우남 등이 발의한 「농어업인력 지원 법안」을 참고하여 제시할 수 있는 사업전담조직의 역할은 다음과 같음
 - 농어업 관련 구인 구직 접수 및 수리
 - 취업 알선, 채용여부 확인 등 직업소개
 - 직업 상담 등 직업지도
 - 농어업 인력의 숙소, 수송, 보험 가입 지원
 - 농어업 인력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운영
 - 농어업 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 농작업 실무교육 또는 연수
 - 농작업 환경개선과 관련한 사업
 - 농어업 자원봉사자 인증 및 고숙련자 인증 등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허창옥 의원(무소속, 대정읍) 등은 2017년 9월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은 [첨부]로 수록하였음

■ 타 지방자치단체 사례

- 타 지자체는 농업 고용인력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전담조직을 지정 또는 설치 하고 있음
 - 광역자치단체 2개소(경상북도 · 전라남도)에서는 농어촌 인력지원계획을 수립 · 시행하면서 농어촌인력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지원하고 있음
 - 지정은 기존 직업알선기관을 농어촌인력지원센터로 지정하고 지원하는 것을 말함
 - 기초자치단체(7개소)에서도 인력 소개를 목적으로 인력중개센터를 설치·지원하고 있음

구 분	제정일	계획수립	센터	교통	보험	숙박	교육
경상북도	2016.04.14	0	지정	-	-	-	-
전라남도	2016,10,27	0	지정	-	-	-	-
경상남도 거창군	2012,03,26	-	설치	0	0	-	-
경상남도 함양군	2015.02.26	-	설치 · 위탁	0	0	0	0
전라북도 완주군	2015.12.28	-	설치 · 위탁	0	0	0	0
경상남도 창녕군	2016,03,25	-	설치 · 위탁	0	0	0	0
경상남도 밀양시	2016.04.14	-	설치 · 위탁	0	0	0	0
경상남도 합천군	2016,04,15	-	설치 · 위탁	0	0	0	0
경상북도 의성군	2016.11.28	-	설치 · 위탁	0	0	0	-

〈표 5〉 타 지자체 관련 조례 제정 현황 및 지원 내용

- 조례에 근거한 지원내용은 교통지원, 숙박지원, 보험지원, 교육 등으로 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 교통지원: 관외 구직자에게 작업 지역에 따라 5일 이상 농작업에 참여하거나, 단체로 20명 이상 농작업 참여시 교통비 또는 차량임차료, 유류비 등을 지원함
 - 숙박지워: 지워센터에 합숙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내 체험휴양마을을 활용하여 출ㆍ퇴근이 불 가능한 관내 · 외 구직자에게 숙박과 식사를 제공함
 - 보험지원: 참여일로부터 1개월로 자부담 없이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시 3천만 원, 입원 시 입원비 2백만 원의 보장내용을 주로 하고 있음
 - 교육지원
 - 해당농가에서 현장교육을 실시하거나, 교육농장을 지정하여 초보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함
 - 관외 인력이 3일 이상 현장교육에 참여할 시 교육비를 지원하기도 함
 - 기타: 구직자 대상 안전교육 실시 및 안전용품 무상 지원

[부록]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내에서 농어촌 인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하여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를 개선하고, 안정적인 농어업 생산활동 지원과 농어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1. "농어업"이란 농작물재배업, 축산업, 임업 및 어업을 말한다.
- 2. "농어촌인력"이란「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3조제2호, 제3호, 제4호, 「수산업·어촌발전 기본법」제3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른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가 고용하는 내국인을 말한다.
- 3. "농어촌인력지원센터"란 농어촌의 인력난 및 인력수급 불일치 문제 개선을 위하여 농업인과 어업인, 농업 및 어업경영체, 생산자단체에 인력을 중개하는 기능 등을 수행하는 센터를 말한다.
-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제주자치도내 농어촌인력난 해소와 농작업의 안정적인 고용창출을 위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추진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지원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4조(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 ① 도지사는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농어촌인력지원계획 (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3년마다 수립·시행해야 하며, 필요시 매년 보완하여 시행할 수 있다.
 -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농어촌인력의 수급현황 및 전망
 - 2. 농어촌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기본목표 및 추진방향
 - 3. 농어촌인력 지원을 위한 시책 및 지원 활성화 방안
 - 4. 농어촌인력의 교육 · 훈련에 관한 사항
 - 5. 농어촌인력지원센터 지원에 관한 사항
 - 6. 농어촌 일자리 홍보 및 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 7.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도시의 유휴 노동력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농어촌인력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③ 도지사는 매년 지원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 제5조(농어촌인력지원센터의 설치·지원) ① 도지사는 농작업 참여자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농작업 인력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 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 1. 농어업인력의 관리 및 지원
 - 2. 농어업관련 구인 · 구직 등록, 취업 알선 · 연계
 - 3. 농어업구직등록자에 대한 실무교육 또는 현장연수
 - 4. 농어업자원봉사자 관리
 - 5. 농어업고용정보의 수집 · 분석 및 제공
 - 6. 농어업고용서비스 모델 개발 및 보급

- 7. 도시민 등에게 귀농, 귀어 정보 제공
-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③ 도지사는 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농어업인력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관련 법인이나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 ④ 제3항에 따른 지원센터의 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준용 하다.
- 제6조(위원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지원계획 및 지원센터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 특별자치도 농어업인력운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 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③ 위원장은 농어업 분야를 소관하는 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 1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 2 제주자치도 농축산식품국장
 - 3 제주자치도 해양수산국장
 - 4. 지역 농 · 축 · 수산업협동조합장
 - 5 농업인단체의 대표자
 - 6. 그 밖에 농어업인력 관련 유관기관 관계자와 농수축산업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 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1. 농어촌인력지원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 2 농어촌인력지원 성과분석
 - 3 그 밖에 농어촌인력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 제8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③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할 가사 1명을 두되, 가사는 농업인력 담당 과장이 된다.
 - ⑥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제9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 · 운영) 도지사는 농어촌인력 지원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 · 시행하기 위하여 도내 농어업 고용정보, 직업훈련안내 등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 · 운영할 수 있다.
-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참고자료

- 1. 강승진, 김철민, 2013, 「고령화시대 제주지역 농촌 노동력 확보방안」, 제주발전연구원.
- 2. 김정섭, 오내원, 허주녕, 2014, 농업 고용노동력 수급실태와 대응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3. 김정섭 · 김경덕 · 임지은, 2015, 농촌 지역의 사회적 경제 실태와 활성화 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기본연구보고서.
- 4. 농촌진흥청, 2017, 2016 지역별 농산물 소득 자료, 농업경영연구보고 제145호.
- 5. 농촌진흥청, 2017, 농업경영개선을 위한 2016 농축산물소득자료집, 농업경영연구보고 제144호.
- 6. 김정섭 · 엄진영 · 유찬희, 2016, 일자리 없는 농촌, 할 일 많은 농촌,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7. 엄진영, 김광선, 임지은, 2017, 농촌지역 노동시장 변화 실태와 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8. 장민기, 2016, 농업 분야 인력용역회사 활성화 방안 연구, (사)농정연구센터.
- 9. 제주특별자치도 농업기술원, http://www.agri.jeju.kr/agri/index.htm.
- 10. 통계청, 2010, 농가경제조사 일계부, https://mdis.kostat.go.kr/index.do.
- 11. 통계청, 2016, 농가경제조사 조사표_노동투입내역(제공), https://mdis_kostat.go_kr/extract/extNblkSurvSearch_do?curMenuNo=UI_POR_P1201.

[※] 내용 문의 : 제주연구원 산업경제연구부 안 경 아 책임연구원 (T. 064-726-7412 / ahn@jri,re,kr)

JRI정책이슈브리프

제주연구원 Jeju Research Institute

Jeju Research Institute 6314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아연로 253 Tel. 064-726-0500, Fax. 064-751-2168

www.jri.re.kr